

오장동 등 정비계획 신규수립 4개소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해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. 07. 17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제한지역

연번	위 치	면적(ha)	비고
1	오장동 148-12 일대	1.38	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
2	광희동 34-1일대	1.12	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
3	주교동 125-2일대	0.8	주교동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
4	충무로 43 일대	1.92	충무로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
소 계		5.21	

2. 제한근거 및 사유

가. 제한근거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

나. 제한사유 :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 방지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함

3. 제한대상행위

가. 건축물의 건축 등

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
-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
-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
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
나. 토지분할

다.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
※ 제한 적용 예외

- 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
-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
-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
-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
4. 제한기간 : 고시일로부터 각 구역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까지

※ 고시일로부터 최대 3년(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)

※ 제한기간 내 정비계획이 결정고시 될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효력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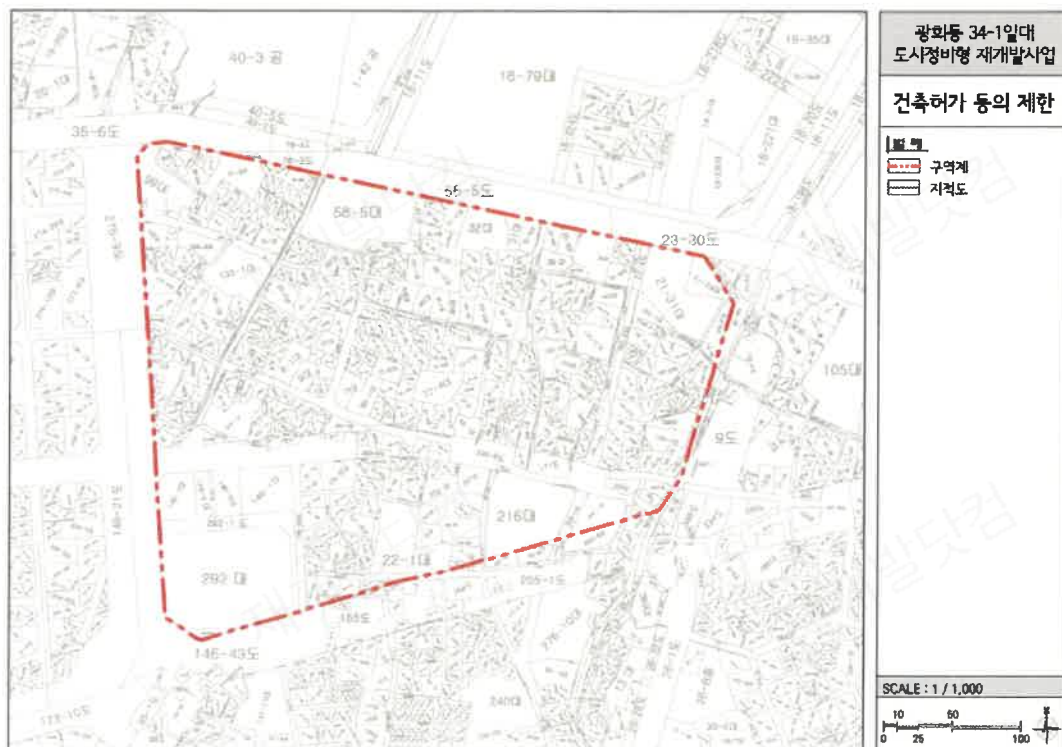
5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

■ 붙임

○ 오장동 148-12 일대



○ 광희동 34-1 일대



○ 주교동 125-2 일대



○ 충무로 43 일대

